

신구조문대비표

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8592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	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9935호, 2023. 12. 31., 일부개정]
<p><b>제12조(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) ①·② (생략)</b></p> <p>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<b>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</b>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④ (생략)</p>	<p><b>제12조(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<b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</b>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p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</p> <p>2. 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3조(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) 관세청장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자,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</b></p> <p>1.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</p> <p>2.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</p> <p>3. 그 밖에 원산지증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p>	<p><b>제13조(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) ① 관세청장은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</b></p> <p>1.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</p> <p>2.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</p> <p>3. 그 밖에 원산지증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는 수출자,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</p> <p>2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농업인,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</p> <p>3.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수산인, 어업인,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35조의2(보정이자) ①</b>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「관세법」 제3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(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제3항에서 같다)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「관세법」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(이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)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에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</p>

	<p>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“보정이자”라 한다)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납세의무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</p> <p>2. 「관세법」 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>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 또는 「관세법」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.</p>
<p><b>제36조(가산세)</b>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「관세법」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(이하 이 조에서 “법정납부기한”이라 한다)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(이하 이 조에서 “미납부세액”이라 한다)을 징수하거나 「관세법」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(이하 이 조에서 “부족세액”이라 한다)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.</p> <p>1.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<b>부당한 방법으로</b>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<b>제36조(가산세)</b>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「관세법」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(이하 이 조에서 “법정납부기한”이라 한다)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(이하 이 조에서 “미납부세액”이라 한다)을 징수하거나 「관세법」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(이하 이 조에서 “부족세액”이라 한다)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.</p> <p>1.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. 다만,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<b>부정한 행위로</b>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4조(벌칙)</b> ① (생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과실(過失)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3. ~ 7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<b>제44조(벌칙)</b>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다만, 과실(過失)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2의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</p> <p>3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